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FAQ

최종 업데이트: 2024년 3월

1.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한민국의 포괄적 데이터 보호법이며,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제공 및 관리를 규정하는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관련 하위 규정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이 2023년 3월에 통과되고 개정 조항의 대부분이 2023년 9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는 다양한 안내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를 해석하고 개인정보 관리자의 규제 준수 의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적 적용범위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물리적인 사무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체에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행한 행위가 대한민국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치외법권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국외의 기업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가 대한민국에서 국외로 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해외로 전송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수집되어 대한민국으로 전송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3. 개인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과 관련된 (a)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미지 또는 기타 식별자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b)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정보, (c) 하위 항목 (a) 또는 (b)에 따라 가명 처리되어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추가 정보와 결합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면 식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원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결, 연동, 기록, 저장, 보유, 부가가치 처리, 편집, 검색, 출력, 수정, 복구, 사용, 제공, 공개, 파기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전송, 중계, 전환, 액세스, 열람, 수정, 보완, 공유 및 보존하는 것도 "처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를 "전달"한다고 해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ISP가 개인정보를 전달하지만 ISP가 규제 기관이 전달한 데이터의 맥락을 ISP의 정보 제공으로 읽거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개인정보 관리자 또는 수탁인이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급되는 "개인정보 관리자"는 GDPR의 "데이터 관리자" 개념과 유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하는 공공 기관, 회사, 조직,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자의 범위는 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관, 협회, 공공 기관 및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자연인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됩니다. 실제 처리가 기관, "수탁인"(아래 설명 참조) 또는 위임된 개인과 같은 다른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단체는 개인정보 관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되는 "수탁인"은 개인정보 관리자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GDPR의 "데이터 처리자" 정의와 유사).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자 및 "수탁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필수 항목이 포함되고 위탁 업무의 목적을 명시한 서면 데이터 처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Autodesk는 "개인정보 관리자" 역할을 하며 "수탁인"으로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임받습니다. Autodesk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Autodesk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당사가 처리하는 고객 콘텐츠에 대한 "수탁인"으로서 위임받고 다른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무엇이며, Autodesk는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 권리를 제공합니다.

- 수집 목적, 개인정보 수집 시 또는 수집 전의 개인정보 사용 또는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정 정보를 고지받을 권리
-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액세스,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권리
-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중단 또는 처리 동의 철회를 요청할 권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Autodesk 법인은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데이터 주체에게는 이동권이 제공될 예정이지만 이 권리의 발효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부터 데이터 주체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유지하도록 요구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 중 하나에 기반하는 경우에만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허용합니다.

- 데이터 주체의 동의
-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을 승인하는 관련 법률, 쌍무 조약 또는 국제 협약
- 데이터 주체가 당사자인 연락처를 실행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국가 간 데이터 전송 및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전송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데이터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데이터 주체에게 (i) 전송되는 항목, (ii) 데이터가 전송되는 국가, (iii) 전송 날짜 및 방법, (iv) 데이터 수신자의 이름, (v) 수신자의 목적 및 보유 기간, (v) 국가 간 데이터 전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및 이의 제기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국가 간 전송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보장 요구 사항, 불만 사항 및 분쟁 해결 프로그램 채택 등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7.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규칙을 제정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자가 14세 미만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자는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 대리인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14세 미만 개인에게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서면 동의 양식을 발송하거나, 법정 대리인에게 양식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청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 후 법정 대리인에게 전화상으로 구두 동의를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Autodesk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utodesk는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utodesk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특정 클라우드 제품의 운영 환경에 대한 ISO 인증을 유지하고 일부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 SOC 2 규제 준수 감사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rust Center](#)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DPO@autodesk.com에 이메일을 보내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